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58
----------	-------

발의연월일 : 2025. 10. 13.

발 의 자 : 이용우 · 박민규 · 민병덕

김 윤 · 이주희 · 박지혜

박정현 · 임미애 · 백승아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시설을 개발하여 건설하고 운영·관리를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글로벌 물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글로벌 물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국외사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해외사업 수행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 특히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 건설 등의 사업은 해외 수주 시 국내기관 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므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또한 제한 없이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제1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업
2.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의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3. 댐 상류 및 그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일반수도와 하수도 시설의 개발·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4.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 ① (생 략) ② 공사는 <u>제1항 각 호의 사업</u> <u>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u> <u>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u> <u>운영 · 관리할 때에는 공사가</u> <u>개발 · 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u> <u>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u> <u>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9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다음 각 호</u> ----- ----- <u><후단 삭제></u> 1. <u>제1항 각 호의 사업</u> 2. <u>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의</u> <u>건설 및 운영 · 관리사업</u> 3. <u>댐 상류 및 그 이외의 지역</u> <u>에서 시행하는 일반수도과 하</u> <u>수도 시설의 개발 · 설치 및</u> <u>운영 · 관리사업</u> 4. <u>공사가 개발 · 관리하지 아</u> <u>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u> <u>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u> <u>시행하는 신 · 재생에너지설비</u> <u>의 설치 및 운영 · 관리사업</u> 5.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물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u>

③ ~ ⑤ (생 략)	<u>영 · 관리사업</u> ③ ~ ⑤ (현행과 같음)
-------------	-----------------------------------